

서해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

□ 회의 개요

- 일 시: 2026. 8. 25.(화) 14:00~15:30
- 장 소: 의원간담회장
- 참 석: 서해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 (전원참석)
- 내 용: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회의 공개 여부 결정,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 잠정금액 결정 및 주민의견 수렴 방법 결정 등

□ 회의 결과

- 위원장: ○○○ 위원 / ○ 부위원장: ○○○ 위원
- 회의 공개 여부: 비공개
- 월정수당 잠정금액
 - 2027년 (공무원보수인상률 3.5%): 월 2,544,320원
 - 2028년~2030년: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
- 의정활동비 잠정금액(2027년~2030년): 월 1,400,000원
- 주민의견 수렴 방법: 여론조사
- 제2차 회의 일정: 2026. 9. 18.(금) 16:30

□ 회의록

발언자	발 언 내 용
의회통계팀장	○ 회의 진행 및 참석자 소개
구청장	○ 위촉장 수여 및 인사말씀
○○○위원	○ 선서문 낭독

발언자	발 언 내 용
의회통계팀장	○ 다음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위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심의위원	○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재적위원 10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첫 번째 안건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임시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의회통계팀장	○ 다른 위원님께서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임시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심의위원	○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과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 다음은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추천이 없으시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심의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 부위원장으로 ○○○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발언자	발 언 내 용
부위원장	○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잘 조율하면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다음은,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 외부인의 참관을 허용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통계팀장	○ 회의 공개 여부는 회의 현장에 외부인이 참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결정한 경우에도 회의록과 위원 명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굳이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위원	○ 의정비와 관련해서는 위원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회의 자체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회의 공개 여부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심의위원	○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 회의 공개 여부: 비공개로 결정
위원장	○ 거수 표결 결과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은, 의정비 잠정금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먼저, 의회통계팀장님으로부터 의정비 결정과 관련하여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통계팀장	○ 의정비 결정 관련 규정 및 회의자료 등 설명

발언자	발 언 요 지
위원장	○ 방금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의정비 결정과 관련하여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지역의 재정 여건과 주민들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가지 유념할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2027년 월정수당 금액이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초과하는 경우와 의정활동비가 인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여야 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 우리 구의 의정활동비가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료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의 결정 내용을 참고하되 단순히 다른 구에서 많이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구도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회통계팀장	○ 2026년 현재, 인천시 군·구 의정비 현황은 별첨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현재, 남동구와 미추홀구가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한 상태이며, 2027년 잠정금액 결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우리 서구가 검단구와 함께 분구되면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금액을 많이 인상하면 좋긴 한데, 그것도 가정형편을 보고 결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의정활동비는 현재 서해구는 130만원 받고 있는데, 법적 상한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우리 서해구가 타구 대비 구의원 1인당 인구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구가 150만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는 1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의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뜻으로 의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자	발 언 요 지
위원장	○ 현재, 의원들은 검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계형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 점 또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가 예전에도 재정이 굉장히 더 열악해서 우리 서구쪽은 나름 주민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상폭, 공무원 인상폭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구 과정에서 재정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 현재 경기가 좋지 않고 구의 재정 여건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정비를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 함께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 지금 여기 자료를 대비해 보면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하면 다른 구하고는 다르지만, 적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본 소견으로는 의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 그리고 돈이 적은 것도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올려주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집안 살림이 없으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지금 다른 구와 비교할 때 아마 서구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인구수는 3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구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데, 지금 다른 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만약 심의를 해서 저희가 20만원을 올려주면 390만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고민하고, 결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으로 월정수당을 5% 올린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가장 걱정 비율은 공무원 인상폭하고 맞춰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그부분은 고민을 좀 더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발언자	발 언 요 지
위원장	○ 한 건, 한 건으로 하고 갈게요. 그러면 월정수당을 먼저 할까요? 의정활동비를 먼저 할까요? 의정활동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결정하는 건 아니고, 잠정 결정이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를 해서 오늘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의정활동비가 130만원으로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150만원까지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해구가 유권자 수가 많은 지역 기초지자체고 이런 의미인데 다른 구도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서, 남동구가 심의위원회에서 150만원으로 잠정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할 수는 없죠. 우리 구는 140만원으로 할까요? ○ 근데, 지금 현재 남동구는 110만원이고, 부평구는 119만원이네요.
의회통계팀장	○ 의정활동비 자료를 보시면 그동안 계속 11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다가 2023년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4년도에 의정비심의회를 개최해서 구마다 금액이 결정됐습니다. 별첨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오늘 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잠정결정하게 되면, 월정수당이 공무원보수인상률인 3.5%를 초과하여 인상될 경우와 의정활동비 인상시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합니다. ○ 주민의견 수렴 후에 마지막 회의에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최종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	○ 근데 의원님들이 많이 활동하시고, 요즘 물가도 오르고 해서 기름값 같은거 50만원 드려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차량을 다 이동하고 또 기름값 등은 따로 나오지는 않으니, 150만원 기준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희 지역구를 보면 의원님들이 많은 활동을 하십니다.

발언자	발 언 요 지
○○○위원	○ 150만원이면 20만원 인상이고, 140만원이면 10만원 인상하게 되는겁니다. 14명이잖아요. 그러면 한달에 140만원이나 280만원이 적용되는 겁니다. 1년으로 따지면 그것도 폭이 커집니다.
○○○위원	○ 제가 회의자료를 미리 보고, 시의원들에 대한 보수도 좀 알아봤습니다. 시의원들은 구의원들에 비해서 일은 조금 안 하거든요. 지금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해서 심의를 해야되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고민하고 오셨을거라 생각이 드는데, 하긴 해야 되는 일이니까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는 방법도 좋을 듯 싶어요. 구의원들이 다 꾀은 일 하러 다니잖아요. 민원도 처리하시고.
○○○위원	○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금액이 월정수당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게 아니구요. 그냥 전체금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합쳐져서 총금액이 얼마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 하나는, 서구, 검단구, 중구가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정도는 아실거고, 각 구의 의장님들도 지금 재정난이 가장 먼저인데, 올려드리고는 싶죠.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욕먹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50만원이나 140만원이나 보다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서 얼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근데, 연수구보다 저희가 많더라구요. 근데, 연수구는 사실 저희보다 재정 상태가 더 나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오히려 연수구보다 저희구가 더 금액이 높고, 같은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연수구하고 사실은 서구를 그동안 많이 비교했는데, 여기에서 또 지금 금액이 연수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는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 150만원이나 140만원이나의 문제가 아니라, 합쳐서 얼마이냐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0만원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5%는 제가 볼때는 많이 요구한 것 같습니다.

발언자	발 언 요 지
○○○위원	○ 기자들이나 시민들이 좋아하는 건 타 구와의 비교입니다. 근데, 지금 자료를 보면 남동구하고 미추홀구 현재 진행사항을 보면,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27년 잠정결정액이 동결인 거잖아요. 남동구는 3.5% 인상이고, 사실은 제가 볼때는 지금 재정난에서 5%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 다음에 의정비가 늘면 늘 욕먹기 때문에, 전체규모를 조정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얼마깁고, 이거 얼마깁고가 아니라 총액 금액 차원에서 나누는게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서구가 그러면 390만원이 됩니다. 근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월정수당은 급여고, 의정활동비는 활동비예요. 그냥 명목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활동비는 그냥 활동비예요. 활동하는데 쓰라고 주는 돈이고, 이거는 최소한 생계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금액이 크지않아요. 근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0만원을 준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390만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따지면 많다는 거죠. 기자분들의 충분한 기사 거리가 될 수는 있어요.
○○○위원	○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정난이 사실, 분구 전격 출범 전부터 어려웠으니까요.
○○○위원	○ 근데, 이게 지금 시작하면 앞으로 몇 년동안 적용되는 거라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당장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안해 준다 이런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한번 정하면 4년 쓰는거죠. 적어도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위원	○ 지금 다른 구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발언자	발 언 요 지
위원장	○ 검단구도 지금 심의위원회 진행중인가요?
의회통계팀장	○ 검단구는 8월말에 심의위원회 1차회의 개최 예정입니다.
○○○위원	○ 우리 하는거 보고 다른 구들도 눈치 보겠쥬.
○○○위원	○ 미추홀구도 그렇고, 여기 청장님, 저쪽 청장님, 여기 의장님, 저기 의장님 너무 예산없다고 하셔서, 지금 전체가 난리이기는 해서, 사실 올린다는게 솔직히 말하면 서해구 주민이기도 한 제 입장에서 너무 돋보이게 올리는건 사실 반대입니다.
○○○위원	○ 아니, 올리는건 맞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금액은 좀 작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 요즘 들어서 이제 경기도 안 좋은 것도 사실이고 구 살림살이도 좀 많이 부정적일 만큼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사실인데요. 어쨌든 구의원들이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물가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기름값도 다 올랐잖아요. 실소비자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의정활동비만큼은 적정 금액 타 구 정도까지는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 지금 회의자료를 살펴보면, 저희가 총액으로 보면 기존에 2위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하위고 그다음에 인구 수 대비해서는 또 3위인데, 2위인 연수구가 130만원 의정활동비가 동일했었고요. 지난번에 전체적으로는 월정수당하고 합치니까 액수가 이제 인천에서 두 번째로 많이 줬다라는 거죠. 과다하게 많이 준 건 아니지만, 순위상은 하여튼 2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많이 줘서 기쁘다라기보다는 아마, 왜 이렇게 많이 주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순위 변동은, 사실은 이게 순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발언자	발 언 요 지
○○○위원	○ 제가 보기에에는 하여튼 올리긴 올려야겠지만 월정수당,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액수를 기본으로 두고 월정수당의 비율, 그다음에 의정활동비 비율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동결은 안 되겠지만, 150만원이라는 액수는 이제 과다하겠죠. 한 달 그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월정수당을 공무원 인상률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아마 1등 할 수도 있어요. 혹시나 이제 나중에 따져보면. 그래서, 의정활동비는 어쨌든 올려주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꼭 10만원 단위로 올릴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119만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꼭 140만원이어야 되느냐, 또 150만원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145만원이 될 수도 있고 135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 미추홀구가 지난번에 보니까 1위였는데, 그때 의정활동비가 140만원이었어요. 근데, 월정수당도 많았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추홀이 1위였었는데 더 올리겠죠. 이제 동결은 안 하겠죠. 이번에 동결했다고 그랬나요? 미추홀구 동결했다고 그랬나요? 확정이 된건가요? 잠정인가요?
의회통계팀장	○ 미추홀구는 1차회의때 동결로 잠정결정했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위원	○ 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월정수당을 예를 들면 공무원보수인상률인 3.5%로 한다 그러면, 의정활동비는 잠정적으로 10만원 인상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구색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데이터 분석을 하셔서 금액, 수치, 순위까지 나왔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자	발 언 요 지
○○○위원	○ 네. 저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고요. 지금 월정수당 3.5%를 계산하고 지금 의정활동비를 20만원 인상하게 되면 계산을 해보니까 월 400만원이 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11개 군구에서 처음으로 이제 400만원이 넘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하고 조율해서 인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 그럼, 의정활동비는 10만원 인상하고, 월정수당을 3.5%보다 3.3% 또는 3% 인상 이렇게 하면 전체금액은 얼마나 나올까요?
○○○위원	○ 연간 전체금액 4,7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 3% 인상하면, 월 400만원이 안되네요. 월 390만원정도 되네요. 그정도도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2028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되니까 그러면, 월 400만원 넘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해가 지날수록 월 400만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공무원보수인상폭으로 적용을 하니까요.
○○○위원	○ 지난번에 저희가 월정수당은 몇 프로 올렸었나요? 공무원보수 인상률에 맞춰서 올렸나요?
의회통계팀장	○ 4년전 의정비결정 자료는 별첨자료 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월정수당은 5% 인상했습니다.
위원장	○ 지금 회의시간이 1시간이 넘었습니다. 오래 계신다고 결론이 날 것 같진 않습니다. 의정활동비 10만원 인상과 월정수당 3%인상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 근데, 3%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이 아니잖아요. 3%나 3.5%는 연봉으로 따지면 20만원정도밖에 차이 안납니다. 그러면, 의정활동비 10만원 인상하고, 월정수당 3.5%인상해야 그래도, 공무원 인상률로 맞췄다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5% 깎으면 2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자	발 언 요 지
○○○위원	○ 의정활동비는 14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위원	○ 총액이 월 400만 원이 넘어가지 않고, 390만원 선에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일단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월 수령액이 400만 원을 안 넘었고, 후년부터는 공무원보수인상률 폭으로 인상되니깐 아마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 그럼, 월정수당은 2027년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인 3.5% 인상으로 정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공무원보수인상률 폭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는 10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할까요?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심의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27년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인 3.5% 인상하여 월 2,544,320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2028년~2030년은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는 13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한 140만원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은, 주민의견 수렴 방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잠정 결정을 했다고 해서 최종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 중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청회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자	발 언 요 지
○○○위원	○ 제 생각에는 공청회를 열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고생한, 그런 수고 과정들을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진 분들은 여론조사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관심 있는 사람들만 참여를 합니다. "나 그거 상관없어"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받아요.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저는 공청회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세요.
○○○위원	○ 공청회를 하게 되면 이게 합리적인 어떤 의사 결정을 한다고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보다는 난상 토론에서 결론이 결국 안 나는 쪽으로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 공청회도 방법중에 하나지만 불협화음이 분명히 산재하므로, ○○○위원님은 여론조사를 선호하셨습니다
○○○위원	○ 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공청회에 있어서 산으로 가는 여러 의견과 그 다음에 목소리 높은 사람 의견, 그다음에 다수 이렇게 하면서 여론몰이하면서 그렇게 해서 아마 합리적인 의견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주민들 의견을 여론조사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래서 아마 여론조사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	○ 근데, 여론조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의회통계팀장	○ 여론조사 용역비는 75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 저는 사실 여론조사를 선호하는 이유가 공청회는 올 수 있는 사람만 사실 오잖아요. 근데 여론조사는 여기 주민들이면 전화를 받을 수 있으니까 홍보도 되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하면, 일반 사람들은 직장 다니면 사실은 관심 있어도 오기 힘들 것 같고, 여론조사가 오히려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자	발 언 요 지
○○○위원	○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모든 사람이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관심 있는 분들이 주로 참석하게 됩니다. 반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이후 여론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완벽하게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여론조사만 실시할 경우에도 결과에 대해 "왜 임의로 결정했느냐"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반면, 공청회는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직접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다소 시끄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만이나 논란은 오히려 줄어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 서구 명칭 변경 당시에조차도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조차도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여론조사의 방식이나 결과에 대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 아니냐",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결국 이후에 다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에도 찬반 양측에서 서로의 의견이나 결정방식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각각 다른 의견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위원	○ 그런데, 말 많은 사람들이 공청회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제일 시끄럽습니다.

발언자	발 언 요 지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려와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려는 분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특히 의정비 심의와 관련해서 불만이 있는 주민이 걱정하고 참석할 경우, "마음에 들지 않는 구의원들의 의정비를 왜 인상해 주느냐, 무슨 근거와 자격으로 인상하는 것이냐"는 식으로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간에 상당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이러한 분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선정된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 과정에서 의정비와 관련된 상황이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걱정하다고 생각하면 "걱정하다",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비합리적이다"라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공청회의 경우에는 의견이 지나치게 대립하여 서로 갈등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의회통계팀장	○ 회의 자료를 보시면 여론조사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원	○ 이 부분은 문구나 내용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통계팀장	○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2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를 실시할 것인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결정한 후, 구체적인 진행 방법과 세부 사항은 2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원	○ 그러면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현재 결정한 금액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발언자	발 언 요 지
의회통계팀장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첨자료 20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그러니까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 그 경우에는 인상 폭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3~4% 정도로 낮추거나, 10만 원을 인상하는 안이었다면 9만 원 정도로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원	○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의회통계팀장	○ 네. 있습니다. 만약 여론조사에서 현재 위원회에서 결정한 잠정 금액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으면 그대로 최종 결정하시면 됩니다. 반면, 현재 결정한 금액이 높다는 의견이 많고, 더 낮은 금액을 선택한 주민이 많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다시 금액을 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수준에서 최종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	○ 그러면, 그 범위안에서 다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의회통계팀장	○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잠정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여론조사에서는 27년도 연간 의정비에 대한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결정하여 질문문항에 적용하도록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로 설정할 것인지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해 주시면 됩니다.

발언자	발 언 요 지
위원장	○ 그러면 고민만 하면 안 되죠. 결과가 빨리 나와야죠. 그럼, 거수로 할까요? 공청회가 1번, 공청회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공청회 3명입니다. 여론조사 손 들어주세요. 여론조사 6명입니다. 1명이 기권하셨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회통계팀장	○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재적위원이 10명이므로 7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위원	○ 그럼, 결정이 안나면 집에 못가는 건가요?
의회통계팀장	○ 의결 정족수가 충족될때까지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공청회는 다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청회에는 주로 전문가나 해당 사안에 관심이 있는 일부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나중에 주민들 깜짝 놀랍니다. 예를 들어, 의회 의견이 반영되어 의정활동비가 15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공청회는 의견취합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로 심플하게 가자는 겁니다.
○○○위원	○ 제 생각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실제로는 일정한 사람들만 응답하고,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은 채 조사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	○ 우리가 여론조사를 신뢰하는 것은, 여론조사는 특정 대상을 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라면 주민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발언자	발 언 요 지
○○○위원	○ 그 부분은 표본 수가 충족될 때까지 계속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정해진 표본 수가 확보될 때까지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 어쨌든, 기권하셨던 분, 한명만 정하시면 되니까, 어떻게 하실건지 정해주시죠.
○○○위원	○ 저는 공청회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 그럼, 여론조사가 6명, 공청회가 4명으로 다시 해야합니다. 어느 한쪽의 의견이 7표에 도달할때까지 계속 진행해야합니다.
○○○위원	○ 공청회는 경비가 얼마나 들어요? 700만원까지는 안 들어가지 않나요?
의회통계팀장	○ 네. 맞습니다. 공청회는 여론조사만큼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위원장	○ 돈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준비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	○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금액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 그러면, 이번엔 무기명 투표로 다시한번 진행해 볼까요?
○○○위원	○ 어차피, 무기명 투표로 해도 결과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 그래도, 무기명 투표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6표, 공청회 4표 나왔습니다. ○ 현재, 의견이 6대 4로 나뉘어 있어, 의결을 위해서는 한 분의 의견을 더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심의위원	○ 없습니다.

발언자	발 언 요 지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앞서, 주민의견 수렴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확인하였으나, 의견이 계속하여 나뉘어 결론에 이르지 못한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확인하여 주민의견 수렴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의견 수렴 방법에 대하여 공청회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명입니다. 여론조사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세요. 7명입니다. ○ 공청회 3명, 여론조사 7명으로 주민의견수렴 방법은 여론조사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심의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의견 수렴 방법은 여론조사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마지막으로, 제2차 회의 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 2차 회의는 회의실 사용 일정상 9월 17일 또는 9월 18일 오후 4시 이후에 개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일정을 확인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 17일은 일정상 참석하기 어렵고, 18일 오후에는 참석이 가능합니다.
○○○위원	○ 18일 오후 4시 30분 정도라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위원	○ 다른 위원님들의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 18일은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발언자	발 언 요 지
위원장	○ 여러 위원님들의 일정을 종합한 결과, 9월 18일 오후 4시 30분이 가장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 가능한 시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그럼, 제2차 회의는 9월 18일 오후 4시 30분에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심의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회의는 9월 18일 오후 4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마지막으로 추가 토론할 사항이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럼, 오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정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서 내용을 확인해주시고, 각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서 확인 및 서명] ○ 이상으로,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